

**서울특별시마포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  
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**

서울특별시마포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  
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(중전의  
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  
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  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마포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  
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  
례(안)**

서울특별시마포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  
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  
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  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